#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0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정희용・김소희・김성원

김종양 · 강승규 · 김승수

김선교 • 구자근 • 정점식

주호영 · 한기호 · 이철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 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법률 제 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2		
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			
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나.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		
	을 받아 이로 인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u>사람</u>		
<u>나.</u> (생 략)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